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5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8.

발의자 : 김민기 · 김병욱 · 김상희

김영춘 · 김정우 · 김현미

노웅래 · 도종환 · 박영선

서영교 · 손혜원 · 안규백

안민석 · 오영훈 · 윤관석

윤소하 · 윤후덕 · 이석현

장정숙 · 전재수 · 정성호

조정식 · 표창원 · 황주홍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라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국 7,110여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회에 불과하고, 상당수의 교사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, 유치원생들은 응급처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,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).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으로, “실시하여야야”를 “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 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